

##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 제안이유

- 성실납세의무자에게 경품등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의 전환으로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3월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와 정기분 부과세목(자동차세1·2기분,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을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지방세경품추첨프로그램에 의거 추첨함(안 제3조, 제4조)
- 경품물건 및 금액과 대상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함(안 제5조)
- 추첨은 시장이 추천한 자가 추첨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 검토의견

- 동 조례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의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요인 사전예방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성실납세 의무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 고유사무에 속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교적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지방세 납부의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지방재정 제도의 보완적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
- 또한, 내용면에서는 경품 추천대상을 파주시시세조례 제3조(세목)제2항 보통세의 8개 세목중 대부분의 주민들이 납세자인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 4개 세목의 연납자와 기한내 납부자중 일정인원을 전산 추천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조례안 검토를 위해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관련 지침에 의거 시비 4백만원을 확보하여 140명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는데, 앞으로 조례제정 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와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됨.